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6. 29 선고 2021가단62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덕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29.

주 문

1. 경북 예천군 C 답 370㎡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8.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8. 10. 25. 접수 제17879호로 경료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남인수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가소 33670호 물품대금 등의 판결금 채권자이고, 피고는 D와 특수한 신분(부 ?)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2. 원고회사의 채권발생 경위

가. 원고 회사는 주소지에서 제관, 철강, 건축자재, 데크프레이트, 씨형강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구시 북구에서 E이라는 상호로 농자재 산업을 하던 D로부터 자재의 납품을 요청 받고, 자재를 납품한 다음 2011. 2. 1.경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그 후 D가 2011년 5월부터 2011년 7월 사이에 3회 입금을 하고 더 이상 지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회사는 수차례 지급독촉을 하다가 부득이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소33670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당시 위 법원에서 청구인 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송달하였으나 D가 별 다른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2. 8. 24.경 확정이 되었습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

가. 그 후 원고 회사는 D가 스스로 변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변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몇 차례 지급독촉을 하다가 강제집행 예고통지를 하자 D가 2015. 4. 8 .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매 월 26일 20만 원씩 지불 약속을 하면서 기다려

달라는 사정을 함으로써 원고회사는 D의 사정을 고려하여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D가 이행할 생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D에게 지급독촉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D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점차 연락을 피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라 부득이 위 판결금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러던 중 원고 회사는 최근에 D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상북도 예천군 C 답 3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0. 25.자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사해행위의 여부

가. 위와 같이 원고 회사는 D에 대한 판결금 채권으로 수시로 변제 독촉을 하고 있었는데 위 시경 D가 원고 회사의 집행을 예상하고,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임에도 위 증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관계는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무효의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채무자인 D가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인 증여계약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로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8. 10. 16. 증여계약을 원

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8. 10. 25. 접수 제 178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정으로 보아 D와 피고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이 위 채무로 인하여 지급독촉을 받던 D가 원고 회사의 집행을 예상하고,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 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통정에 의한 것이거나 적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증여계약을 근거로 한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말소 또는 취소되어야 할 사정이라 할 것입니다.

5. 결 어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과 같이 원고회사는 D에 대한 채권자이나 피고와의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우선 피고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고, 사정상 이에 대한 취소가 여의치 않은 경우 그 대가로서 원고의 채권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